

서울특별시 독립영화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16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'독립영화 활성화'는 영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독립영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한국영화의 경쟁력 강화 및 서울 영상 콘텐츠의 다양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의 사업으로,
- 나.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영화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 및 전문 지식, 인적·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
- 다.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 결과, '적정'으로 의결되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업명 : 독립영화 활성화
- 나. 위탁기간 : 3년 (2020.1.~2022.12.)
- 다. 소요예산 : 1,164백만원('20년 예산)
- 라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마. 위탁사무내용

- 서울 배경 독립영화 제작 지원
- 영화제 협력을 통한 독립영화 제작 지원
-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 지원
- 독립영화 시사회 개최 지원
- 독립영화 공공상영회 운영

바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 :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7조 및 제10조
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 - ‘독립영화 활성화’는 영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독립영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독립영화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,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영화관련 경험 및 역량이 축적된 전문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 필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

제7조(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) ① 시장은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해외에서 제작되는 영상물, 해외 수출용 국내 영상물, 국제공동 제작 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0년 민간위탁금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경제정책과 콘텐츠산업팀 이효리 (☎ 2133-5236)